

##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간행하는 학술지 『코기토』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책임과 의무)** 연구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성과물만을 투고해야 하며,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이해 상충이 의심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논문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 심사위원이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안된다. (단, 특수한 전공 분야 등으로 심사자에 제한이 있을 경우, 편집회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따라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와 같은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 ①위원장: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위원: 연구소 각 연구센터 센터장과 편집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③간사: 연구소 편집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6조 (심의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성과물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한다.

- ①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②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 ③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보된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되면, 연구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 연구성과물을 삭제하며, 연구소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KCI와 KERI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연구자는 연구소의 학술지에 영구히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8조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분이 노출되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연구소가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 ②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연구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8년 4월 13일 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8년 6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20년 9월 16일 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에 따른다.